##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38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황 희·어기구·한민수

박 정·안규백·김태년

차지호 • 이학영 • 문진석

박수현 · 문대림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 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상가나 주거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 로써 세입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 의2 신설).

법률 제 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자 이주대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①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의2.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u>대책</u>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